



# 대금결제론

유하상



추심에 관한 통일규칙(URR 522, 1995)



# 1. 추심의 정의

## 추심이란?

### ➤ 추심(collection)이란

- 1) 은행이 접수한 지시에 따라 인수 또는 지급을 받기 위하여 또는
- 2) 인수 및 지급과 상환으로 서류를 인도하기 위하여
- 3) 또는 기타의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하기 위하여  
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말함

※ 추심 대상 서류 : 금융서류(financial documents)와 상업서류(commercial documents)

- ✓ 금융서류 : 환어음, 약속어음, 수표, 지급영수증 또는 기타 금전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증서
- ✓ 상업서류 : 송장, 선적서류, 권리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또는 기타 금융서류를 제외한 모든 서류



# 1. 추심의 정의

## 추심의 종류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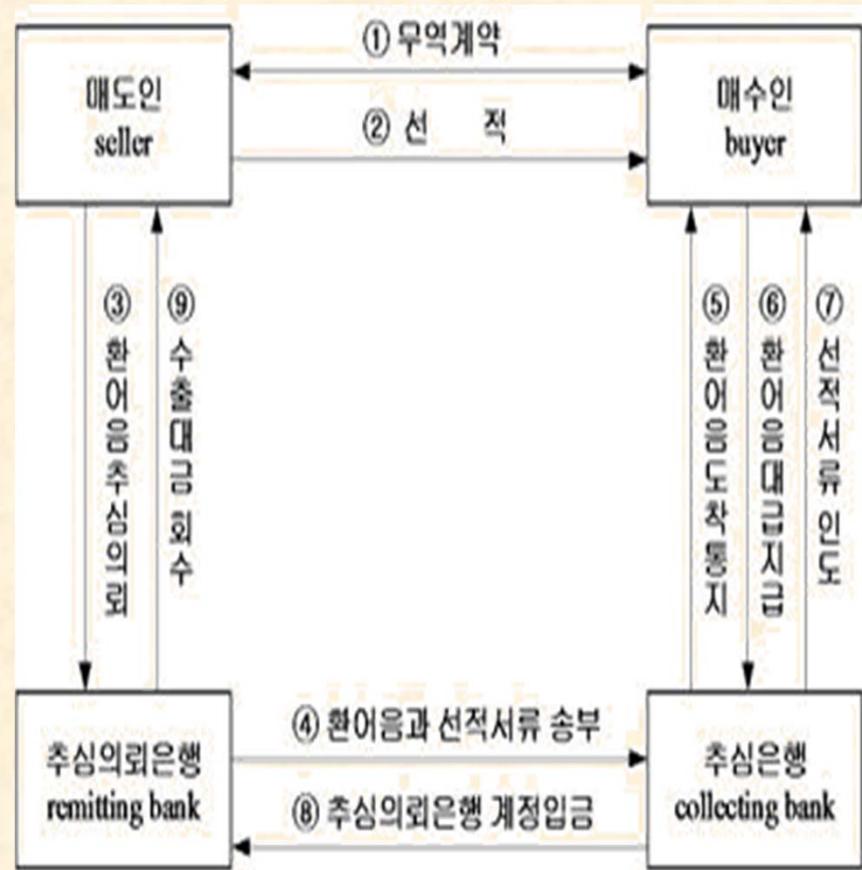
- \* **화환 추심(documentary collection)** : 상업서류가 첨부된 금융서류의 추심 또는 금융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상업서류만의 추심
- \* **무화환(무담보) 추심(clean collection)** : 상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금융서류의 추심



# 1. 추심의 정의

## 추심의 절차?

- \* **매도인(추심의뢰인)** : 추심업무를 의뢰하는 당사자(principal)
- \* **추심의뢰은행(추심요청은행)** :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추심업무를 의뢰 받은 은행(remitting bank)
- \* **추심은행** : 추심요청은행 이외의 추심의뢰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, 단 추심요청은행이 추심은행이 되는 경우도 있음(collecting bank)
- \* **제시은행** : 지급인에게 제시를 행하는 추심은행(presenting bank)
- \* **매수인(지급인)** : 추심지시서에 따라 제시를 받아야 하는 당사(drawee)





## 2. 추심의 형식과 구조

### 추심지시서(collection instruction)

- \* 모든 서류에는 URC 5.22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명시할 것
- \* 완전하고 정확한 지시가 기재된 추심지시서를 첨부할 것
- \* 추심은행은 추심지시서에 그 자체에 기재된 지시와 URC에 따라서면 업무를 수행할 것
- \* 추심은행은 추심지시서 이외의 다른 곳에서 지시를 찾지 말아야 하며, 지시를 찾기 위해 서류를 검토할 의무가 없음
- \* 개별서류에는 어떤 지시도 기재되지 말 것, 지시가 있어도 무시됨

### 제시의 형식(form of presentation)

- \* 제시란 제시은행이 지시 받은 대로 URR에 따라서 서류를 지급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절차
- \* 서류는 접수한 형태로 지급인(수입업자)에게 제시되어야 함
- \* 서류와 추심지시서는 추심요청은행이 추심은행으로 직접 송부되거나 다른 은행을 중개인으로 하여 송부될 수 있음/



## 2. 추심의 형식과 구조

### 일람불(sight)/인수(acceptance)

- \* 서류가 일람출급인 경우 : 제시은행은 지체 없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할 것
- \* 서류가 기한부 지급조건인 경우 : 제시은행은 인수가 요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할 것
- \* 지급이 요구되는 때 : 적합한 만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할 것

### 상업서류의 인도- 인수인도(D/A) VS 지급인도(D/P)

: Release of commercial documents-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(D/A) vs Documents against payment(D/P)

- \* 추심지시서가 서류가 지급과의 상환으로 인도되도록 지시되어 있는 경우 (즉, d/p), 장래의 확정일 지급조건(기한부) 어음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
- \* 만일 장래 확정일 지급조건이 환어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추심지시서에는 인수인도(D/A) 또는 지급인도(D/P) 중 어느 조건으로 지급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할 것,
- \* 그러한 명시가 없거나, 지급과의 상환으로 서류가 인도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업서류는 지급과 상환으로만 인도 되어야 함



## 2. 추심의 형식과 구조

### 서류의 작성(creation of documents)

- \*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/지급인에게 추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류(환어음, 약속어음, 수입화물대도증서, 약속증서 등)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서류의 형식과 문구는 추심의뢰은행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,
- \* 그렇지 않는 경우 추심은행은 추심은행/지급인에 의해 제공된 그러한 서류의 형식과 자구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



### 3. 의무 및 책임

#### 신의성실과 상당한 주의

- \* (추심거래에서의 은행은 신용장거래와는 달리 지급책임이나 서류심사의무는 부담하지 않지만) 신의성실에 따라서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또한 현지의 관례와 법률에 따라서 행동하여야 함

#### 서류 VS 물품/용역 이행

- \* 은행은 서류만을 취급하고 물품이나 어떠한 근거가 되는 계약도 취급하지 않음(예컨대 사전 협의 없이 물품을 보관하고 보험에 들라는 지시와 함께 물품을 보내는 경우가 있음)
- \* 따라서 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물품을 은행에게 발송해서는 안 됨, 이 규칙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
- \* ※ 은행은 운송인이나 창고관리인도 아니기 때문
- \* 지시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이 물품보호조치를 취한 경우,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, 단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추심의뢰은행에 통지해야 함(이와 관련된 모든 위험과 비용은 추심을 송부한 당사자가 부담함)



### 3. 의무 및 책임

####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

- \* 추심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기타 다른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은 그 비용과 위험은 추심의뢰인이 부담함
- \* 그 다른 은행의 선택을 주도하였는지 추심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선택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은 자신이 전달한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,
- \* 다른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당사자는 외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책임에 대해 그 지시받은 당사자에게 보상할 1차적인 의무를 부담함



### 3. 의무 및 책임

#### 접수된 서류에 대한 면책

- \* 추심의뢰인/추심은행은 추심지시서에 서류의 종류와 통수를 열거해야 함
- \* 추심은행은 접수한 서류가 열거된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함, 일치하지 않을 경우(누락, 불일치 등) 추심요청은행에 전신으로(부득이한 경우 가장 빠른 수단으로) 통지해야 함
- \* 추심의뢰은행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추심은행은 서류를 접수된 대로 제시하며 서류자체를 심사하지 않음



### 3. 의무 및 책임

####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

- \* 은행은 서류의 형식, 충분성, 정확성, 진정성, 허위성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음
- \* 은행은 운송인, 수하인, 보험자 또는 다른 모든 사람의 신의성실, 작위 또는 부작위, 파산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음

#### 송달/번역 중의 지연/멸실에 대한 면책

- \* 은행은 서류 송달 중의 지연, 멸실 또는 전기통신 송달 중의 지연, 훼손 또는 오류 그리고 전문용어의 번역이나 해석상의 오류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음

#### 불가항력

- \* 은행은 불가항력(천재, 소요, 폭동, 반란, 전쟁, 기타 불가항력 사유, 동맹 파업, 직장폐쇄)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음



## 4. 지급 및 인수

### 추심금액의 즉시 지급

- \* 추심된 금액은 지체 없이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함
- \* ※ 지체된 경우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채택되지 않았음

### 지급통화

- \* 지급되는 자금이 추심의뢰인/추심요청은행으로 용이하게 송금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에만 지급인에게 서류가 인도될 수 있음.(해당국의 외환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대비한 조항임)
- \* ※ 지급국가의 통화(내국통화)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: 제시은행은 그 내국통화가 추심지시서에 따라서 즉시 처분할 수 있는 경우(내국통화의 환전 등)에 한하여 현지화에 의한 지급과 상환으로 지급인에게 서류를 인도해야 함
- \* ※ 외국통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: 제시은행은 그 외국통화가 추심지시서의 지시에 따라 즉시 송금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외국통화에 의한 지급과 상환으로 지급인에게 서류를 인도해야 함



## 4. 지급 및 인수

### 분할지급

- \* 분할지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제시은행은 지급전액이 수령되었을 때에만 서류를 지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함
- ※ 무담보 추심에 있어 분할지급이 법률에 의해서 허용되는 경우에는 금융서류를
- ※ 화환추심에서 분할지급이 추심지시서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류 (금융서류+상업서류)를



## 4. 지급 및 인수

### 이자/수수료/비용

- \* 추심지시서에 지급인이 이자/추심수수료/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급인이 이의 지급을 거절할 때 : 제시은행은 그 이자/추심수수료/비용을 추심하지 않고 정해진 지급조건(D/A, D/P)에 따라 서류를 인도할 수 있음
  - 추심되지 않은 추심수수료/비용은 추심을 송부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며 지급 받은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
- \* 추심지시서에 이자/수수료/비용을 포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, 지급인이 이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:
  - 제시은행은 서류를 인도하지 아니하며, 이에 따른 서류인도의 지체에서 비롯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함
  -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은행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함
  - 제시은행은 수수료/비용을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당사자에게 요구할 권리를 보유함



## 5. 기타규정

### 인수

- \* 제시은행은 환어음의 인수 형식이 완전하고 정확한지를 확인할 책임은 있지만, 서명의 진정성이나 인수의 서명을 한 그 서명인의 권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

### 약속어음 및 기타 증서

- \* 제시은행은 어떠한 서명의 진정성 또는 약속어음, 영수증 또는 기타 증서에 서명을 한 서명인의 권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
- ※ 일부 국가에서는 제시/추심은행에게 지급인의 인수를 검증할 수 있도록 지급인의 서명을 받아주도록 요구하고 나아가 그 서명자의 서명권한을 검사하는 의무까지 부과하기도 함. URC에서는 이러한 일부 국가의 관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음. 그 이유는
  - 그러한 요구는 국제적 관행이 아님
  - 어떤 경우에는 제시은행은 지급인과 아무런 관계도 가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제시은행이 서명검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함
  - 심지어 지급인이 전혀 은행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



## 5. 기타규정

### 거절증서

- \* 추심지시서에 인수거절, 지급거절의 경우의 거절증서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명시해야 함
- \*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추심은행은 거절증서를 작성하도록 할 의무가 없음
- ※ 거절증서란 추심은행이 환어음의 인수를 지급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지급인이 이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,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, 이는 소구권자가 소구권을 간이/신속하게 행사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사용

### 예비지급인

- \* 추심의뢰인이 인수거절/지급거절, 즉 수입화물의 인수를 원수입자가 거절하는 경우, 당해 화물을 처분(다른 수입업자에게 전매 등)할 필요가 있음. 이를 대비하여 예비지급인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
- ※ 즉 추심의뢰인이 예비지급인으로서 행동할 대표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추심지시서에 그러한 예비지급인의 권한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함
- ※ 그러한 지시가 없는 경우 은행은 예비지급인으로부터의 어떠한 지시에도 응하지 않음, (예컨대 원수입자에 의해 인수 거절된 화물을 매입한 수입자가 서류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)